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

안내서

신주쿠구
2012년 3월

Contents
목 차

1 지금 왜 자치기본조례인가 2

2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의 핵심 6

3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의 내용과 그 설명 9

4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제정을 위한 노력 34

(참고)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조문 40

1 지금 왜 자치기본조례인가

1 자치기본조례란 무엇인가 ?

자치기본조례란 신주쿠구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신주쿠구' 라는 단위로 사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구민 · 의회 · 구청장 (※집행기관) 등 지역 만들기와 관련된 모든 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규정한 '자치 기본 규칙' 입니다.

신주쿠구는 약 4년간에 걸쳐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1년 4월 1일에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기관

구의 집행기관은 구청장과 그 보조기관 (부구청장 및 직원), 그리고 각 위원회 등 (교육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위원) 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청장이 최고책임자로 , 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의거하여 실제 구의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입니다 .

각 위원회와 위원은 독립된 의사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며 , 구청장은 모든 집행기관의 총괄적 대표역할도 담당합니다 .

또한 구청장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 다른 집행직원은 구청장이 직접 임명합니다 (부구청장 , 교육위원 , 감사위원 등의 인사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 또한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해 '구의 행정기관'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2 왜 자치기본조례가 필요한가?

본 조례는 신주쿠구의 자치기본이념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치의 주역인 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의회, 구청장 등의 책무, 구정운영원칙 등의 '자치기본규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신주쿠구라는 자치체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구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구민 · 구의회 · 구청장 등 자치담당자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누구나가 '신주쿠구에 거주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치기본조례는 현재 이미 200개 이상의 자치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제정을 검토 중인 자치체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습니다.

(시구정촌 수: 1999년 3월말 3,255에서 2012년 1월 4일에는 1,742)

이처럼 수많은 자치체가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① '시민활동'의 확산

현재 법인 인증을 받은 NPO는 전국에 4만 개 이상으로, 신주쿠구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있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른바 NPO법인)은 750개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활동단체는 그 몇 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시민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 '무언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시민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②정부와 자치체의 역할 변화

정부도 자치체도 주민 요구의 다양화와 저출산고령화, 복지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전과 같이 모든 요구에 다 대응해드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신생아부터 고령자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구민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지역을 주민들에게도, 방문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거듭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운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습니다.

③지방분권의 진전

정부의 지방분권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이와 관련된 475개의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련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방분권일괄법'이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바로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한 자치체의 가장 큰 이점은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존에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적어도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조례제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통달, 통지가 '기술적인 조언'이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의 통달이 명령 · 훈령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치체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만, 이 의무가 폐지됨으로써 각 자치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이 이양됨으로써, 기초자치체로서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에 의거한 자치체 운영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자치 확충을 꾀하고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지방분권일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핵심적 부분을 담당해왔던 기관위임사무제도가 폐지되어,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는 정부의 직접집행사무로 규정된 것과 사무 자체가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라는 새로운 사무구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3 자치기본조례로 무엇이 바뀌는가 ?

자치기본조례에 의해 우리들의 생활이 '크게 변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치 시스템과 지역 만들기의 기본원칙에 조례라는 형태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구민, 의회, 구청장 등 각각의 역할과 제도 등이 명확해졌습니다.

본 조례로 구민 · 의회 · 구의 책무, 구정운영규칙 등의 기본적 규칙을 규정하여 구민, 의회 및 구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자원을 활용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구민이 주역인 지역 만들기' 를 확립함으로써 구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신주쿠다운 매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의 핵심

1 본 조례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본 조례에서는 자치의 주역인 구민의 권리와, 자치담당자인 구민, 의회, 구청장(집행기관) 각각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여러분들이 자치 · 지역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향해야 할 '지역의 모습' 과 자치에 관한 기본적 사고방식, 조례의 법적 지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총칙(제1장)

- **목 적** …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P.14
- **정 의** …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P.15
- **기 본 이 념** … 신주쿠구에서 더 수준 높은 자치를 추진하기 위한 3가지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P.16
  1 인권 존중
  2 구민이 주역인 자치의 실현
  3 구민자치를 기본으로 한 구정의 추진
- **조례의 법적 지위** … 본 조례를 신주쿠구의 자치에 관한 최고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P.16

자치담당자인 '구민 · 의회 · 구청장' 등의 각각의 책무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각각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민(제2장)~구청장 등(제4장)

- **구민의 권리 및 책무** … 자치의 주역인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P.17
- **의회 및 의원의 책무 등** …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및 의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P.20
- **구청장 등의 책무 등** … 구민의 대표로서의 구청장, 구의 행정기관 및 직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P.23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치제 운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부, 다른 자치체 등과의 관계, 조례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정운영의 원칙 (제 5 장)~ 어린이의 권리 등 (제 9 장)

정부, 기타 자치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등(제10장)

구정운영의 원칙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6 가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P.26

1 재정 건전화와 자립적인 재정기반 확립 및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
2 구의 기본구상에 의거한 종합적인 계획
3 적절한 재정상황 공표
4 조직 상호간의 연계, 일체적 조직의 정비
5 구민 의견의 파악, 구민의 구정참여 및 협동기회의 제공
6 행정평가 실시와 그 결과의 공표, 구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반영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구정에 관한 정보 공개 및 구가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P.27

주 민 투 표

주민생활 및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P.30

지 역 자 치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를 존중하면서 더욱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추진해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P.31

어린이의 권리 등

어린이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 및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보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P.32

정부, 다른 자치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

정부, 다른 자치체 및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P.32

조례의 재검토 등(제11장)

조례의 재검토 등

4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본 조례 및 관련 제반 제도에 대해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P.33

2 구민 , 의회 , 구청장 등의 역할 • 관계

구민 · 구의회 · 구청장 등 자치담당자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누구나가 '신주쿠구에 거주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 느낄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합니다.

구민 , 구의회 , 구청장 (집행기관)~ 각각의 역할

구민= "지역 만들기의 주역"
구정에 참여하여 의견이나 제안을 제시한다 .

구민에게 열려 있는 의회운영
구민에 대한 설명책임

선거 및 구민들의 요청사항

선거 및 구민들의 요청사항
구정참여 , 협력

서비스 제공 , 구정정보 제공 , 지역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구의회= "구의 조정자 역할"
집행기관의 업무를 확인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 만들기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

집행기관 업무의 확인

조례 , 예산 등 구정운영의 내용을 설명

구청장(집행기관)= "구민을 지원하고 업무를 실시하는 실행자 역할"
구의 대표로서 구정운영을 담당하고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

3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의 내용과 그 설명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는 전문과 제1장 '총칙' 부터 제11장 '조례의 재검토 등' 까지 11개의 장과 총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기본이념과 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의회·구청장 등의 책무, 구정운영원칙 등 신주쿠구의 자치기본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문

우리들의 선조들은 과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무사시노 대지의 일각에 집락을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이 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면면이 삶을 영위하며,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워왔습니다.

1947년에 우시고메, 요츠야, 요도바시의 3개 구가 합병하여 탄생된 신주쿠구는 에도시대부터 계획적으로 개발된 시가지지역,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한 신흥상업지역, 구릉지의 언덕에 위치한 순수 농촌지역 등, 각 지역에 따라 다른 풍경을 보여주며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도시화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도 도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주쿠구에는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어우러져 살고 있으며, 날마다 많은 변화 속에서 활력 넘치는 국제적인 도시로서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주쿠구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구축해온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가 도처에 숨쉬고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문호 나츠메 소세키를 비롯하여 훌륭한 인재들을 수없이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주쿠구는 시대의 첨단을 이끄는 새로운 문화의 발신지로서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과 지역풍토는 신주쿠구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특성으로, 우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주쿠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정보 공유화와 구정 참여촉진을 꾀하여 성숙된 지역자치를 이 신주쿠에 꽃피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커다란 사명입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명확하게 감지하여 세계영구평화와 지구환경보전을 추구하고 서로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시민주권 하에 이 땅에 가장 적합한, 우리들이 주역인 자치를 창조합니다.
우리들은 세계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공생사회 실

현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신주쿠구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후세대에 계승하고 모든 이의 마음을 기반으로 삼은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담아, 신주쿠구의 최고규범으로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설명 전문은 지역의 역사와 조례제정의 배경, 자치의 방향성과 기본원리, 제정에 임하는 우리들의 결의 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본 조례 전반의 해석 및 운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 작성 시에는 전체적으로 격조 있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되도록 '입니다·합니다체'를 사용했습니다.

주 제

신주쿠구의 역사 및 문화

에도막부가 열린 케이초우 8년(1603년)의 다음 해에 니혼바시를 기점으로 고 카이도우(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카이 도우(거리), 나카센 도우(거리), 닛코우 카이도우(거리), 오쿠슈우 카이도우(거리), 코우슈우 카이도우(거리)로, 각 거리에는 각각 일정 수의 역참이 만들어졌으며 역참에는 역마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코우슈우 카이도우(거리)는 니혼바시에서 코우후에 이르는 간선거리로, 코우후에서 나카센 도우(거리)의 시모스와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코우슈우 카이도우(거리)는 니혼바시에서 최초의 역참 타카이도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여행자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묘우슈우 · 다카마츠 키로쿠 등이 청원을 하여, 거리의 중간지점에 역참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역참은 나이토우가 막부에 반납한 집터에 만들어졌다는 것과 새로운 역참이라는 뜻에서 '나이토우신주쿠'라고 불리며 신주쿠라는 지명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에도시 가이(거리)의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한 역참마을이었던 에도시대의 신주쿠는 지금의 신주쿠교엔의 북쪽에 위치한, 소극장 등이 모여있는 행락지로 항상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었습니다.

메이지 초기의 신주쿠는 에도시대의 근교 농촌지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신주쿠역 주변은 차밭이나 잡목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도 죠 (성) 해자 주변도

나이토우신주쿠의 마을경관

에도 죠 (성) 해자의 개설 (1636 년)

우시고 · 요츠야를 중심으로 한 무사의 거리와 사원마을의 조성 **⇒유서 깊은 마을이름과 문화재**

나이토우신주쿠의 개설 (1698 년)

번화가의 탄생 **⇒코우슈우 카이도우 (거리) 에 위치한 역참마을, 에도 4 대 역참 중 하나**

행락지 · 명소의 탄생 **⇒타마가와조우스이테이의 벚꽃, 타이소우 지 (절), 쇼우주인 (절)**

근세문예의 부흥 **⇒쿄우카 · 희문학의 융성과 문인문객들의 교류**

철도의 개통과 신주쿠 정차장의 개업 (1885 년)

닛폰 철도 (현 야마노테선) 신주쿠 정차장 개업, 이어서 코우부 철도 (현 추오우선) 도 개통 **⇒터미널역 '신주쿠' 의 형성**

번화가의 발전과 신주쿠 문화의 개화

신주쿠 오오도오리 (거리) · 카구라 자카 (고개) 의 발전과 대중문화의 부흥 **⇒영화 · 연극 · 요세 (소극장) · 음악 · 음식 · 유흥장**

전후 복구와 새로운 번화가의 창출

역전의 부흥과 가부키쵸의 개발 **⇒신주쿠 문화의 부활과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맹아**

문호 나츠메 소세키를 비롯하여 귀중한 인재를 다수 배출

신주쿠구는 나츠메 소세키가 태어나고 자라 그 생애를 마감한 곳입니다.

만년의 9년간을 지낸 와세다미나미쵸의 자택에서 그는 작가로서 본격적인 집필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곳에서 수많은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소세키 산보(산방)라고 불리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신주쿠는 '소세키 산보(산방)'의 복원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츠메 소세키(1867~1916)

신주쿠구의 인구 특성

신주쿠의 총인구 318,086 명 (2012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284,518명 외국인등록인구 33,568명 (10.6%)

총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외국인

한국·북한	12,567 명	프랑스	906 명
중국	12,473 명	필리핀	716 명 등
미얀마	1,153 명		

2001 년도 이후 인구는 증가추세

	2001 년도	2004 년도	2008 년도	※ 2012 년도
총 인 구	288,661 명	299,685 명	310,206 명	318,086 명
주 민 등 록 인 구	264,512 명	270,542 명	278,350 명	284,518 명
외국인등록인구	24,149 명	29,143 명	31,856 명	33,568 명

(※2012년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인구동태 매년 2.5 만 명에서 3 만 명이 전입 · 전출

1 가구당 가족 수 1.66 명

저출산고령화 고령자 인구 (65 세 이상) 59,439명 (20.9%)

연소인구 (15 세 미만) 24,344 명 (8.6%)

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모이는 곳

- **구의 인구 31만 8,086명**
  (2012년 1월 1일 현재 총인구)
- **주간 인구 77만 94명**
  (2005년 국세조사)
  ※ 2010년 국세조사의 수치는 2012년 6월경 발표예정
- **신주쿠역 1일 평균 승강객수 360만 7,498명**
  (2008년 실적 세이부신주쿠역 포함)

- **사업소 수 35,154개소**
- **종업원 수 676,639명**

(2009년 7월 1일 현재 경제센서스 기초조사)

제 1 장 총칙

(목적)

제 1 조 본 조례는 자치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에 의거한 구정운영원칙 및 구민, 신주쿠구의회(이하 '의회' 라고 한다) 그리고 신주쿠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고 한다)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로써 신주쿠구(이하 '구' 라고 한다)의 더 수준 높은 자치실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여기에서는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주쿠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근무하고, 배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지역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만들기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향후의 신주쿠구의 자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에 관한 사항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해 신주쿠구의 자치기본이념에 의거하여 구정운영원칙 및 구민, 의회,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신주쿠구의 더 수준 높은 자치실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의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 처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이념을 구민들의 총의로 본 조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실현을 꾀하기' 위해 항상 기본이념에 비추어 원칙과 역할 등을 고려하고,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에도 진지하게 노력해나간다는 신주쿠구의 자치 자세를 본 조례의 '목적'에 담았습니다.

(정의)

제 2 조 본 조례에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구민 : 구의 구역 내 (이하 '구 내' 라고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및 구 내에서 근무하는 자, 배우는 자, 활동하는 자 및 활동하는 단체를 뜻한다.

(2) 공공서비스 : 공공서비스기본법 (2009 년 법률 제 40 호) 제 2 조에 규정하는 공공서비스를 뜻한다.

(3) 구의 행정기관 : 구청장, 신주쿠구교육위원회, 신주쿠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신주쿠구감사위원을 뜻한다.

(4) 직원 :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뜻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1950 년 법률 제 261 호) 제 3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일반직에 있는 자 및 동조 제 3 항에 규정하는 특별직에 있는 자 (의원 제외) 로 구에 근무하는 자

나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56 년 법률 제 162 호) 제 37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현비 부담 교직원으로, 구에 근무하는 자

설명

'구민' 에 대하여

신주쿠구의 자치 및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주쿠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신주쿠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이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주쿠구에서 근무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신주쿠구의 자치에 협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업자나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NPO법인, 법인격이 없는 자원봉사단체 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신주쿠구의 자치방식을 규정하는 조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조례의 구민을 우선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인 주민, 그리고 신주쿠구에서 근무하는 자, 배우는 자, 활동하는 자 및 활동하는 단체로 정의했습니다.

'공공서비스' 에 대하여

2009년에 '공공서비스기본법' 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률은 누구나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교통, 복지, 교육 등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을 정한 것이 이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금전 및 서비스의 제공, 규제, 감독, 지원, 홍보 등 공공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의 행정기관'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 을 뜻하며, 담당 행정사무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해 결정권을 가지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합니다. 구의 대표자인 구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전문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위원회 및 위원을 뜻합니다.

(기본이념)

제 3 조 구는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구정을 실시한다.

2 구는 구민이 주역인 자치실현을 꾀하고, 구민은 자치 담당자로서 지역 과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3 구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의거한 기초자치체로, 확립된 자치권을 가지고 구민자치를 기본으로 한 구정을 추진한다.

설명

우선 신주쿠구의 자치를 추진해나가는 대전제로, 인권을 존중하고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구정을 실시한다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자치는 구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하여 구민들이 스스로 검토하고 결정하여 추진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이 주역인 자치 실현을 꾀한다는 것을 내걸었으며 구민은 자치 담당자로서 지역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구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의거한 기초자치체로, 다른 이에게서 간섭 받는 일 없이 구민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확립된 자치권을 가지고 구민자치를 기본으로 구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조례의 법적 위치)

제 4 조 구는 본 조례를 구의 최고규범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데 있어서는 본 조례와의 정합성을 꾀하기로 한다.

설명

본 조례는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를 신주쿠구의 최고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규범으로 정한 이유는 헌법이 일본의 통치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는 신주쿠구의 자치 기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우리 지역의 헌법' 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규정한 것입니다.

제 2 장 구민

（구민의 권리）

제 5 조　구민은 구정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갖는다.

2　구민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구민은 구정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4　구민은 구 자치의 담당자로서 평생동안 배울 권리를 갖는다.

설명

구민의 권리로 4가지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구정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는 단순히 구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정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내용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지방자치법 제 10 조 제 2 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공공서비스 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공공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정에 참가할 권리'는 정책 등의 입안, 사업의 실시, 그 평가 등 다양한 과정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사업 담당자로서 또는 대상자로서 참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구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치 담당자로서 평생 동안 배울 권리'는 지역 자치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평생 동안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민의 권리에 포함시켰습니다.

'평생 동안 배운다'란, '이해한다', '정보를 공유한다', '정책을 제언한다'의 전제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의 중요성, 이것이야말로 자치 담당자로서의 구민이 평생 동안 필요로 하는 권리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배울 권리'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주 제

지금까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민 참여 방법

(1) 구민토의회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주민기본대장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참가를 의뢰하고 참가를 수락해주신 분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 그룹 토의 등을 실시하게 함으로서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평소 구정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시민토의회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 구민회의 등

공모 등을 통해 직접 회의에 출석하고, 참여 구민 여러분이 직접 회의를 운영하여 구의 중요 계획서나 조례 초안 등을 작성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구민 여러분이 직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 시책 등을 검토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3) 심의회 등

구의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민위원으로서 의견이나 요망 사항 등을 발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등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공청회, 설명회, 심포지엄 등

공청회 등 공개의 장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개최하는 등 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5) 설문조사 등

무작위로 선정된 구민 분 등이 구가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구민 여러분의 의식이나 실태를 폭넓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또한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구민 여러분이 계시는 곳 등에 직원이 직접 찾아가 의견 등을 묻는 히어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퍼블릭 코멘트(의견공모제도)

구가 수립하는 중요한 계획·조례 등에 대해 의견이나 요망 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중요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의 과정의 투명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검토 결과는 공개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에 대한 구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주쿠구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참여 등에 관한 제도

퍼블릭 코멘트 제도란

구민 생활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시책 등을 결정할 때 사전에 안을 공표하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수렴된 의견과 이에 대한 구의 생각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신주쿠구에서는 이전부터 구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신주쿠구의 특성을 활용한 구정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 시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안을 공표하여 정보 공유를 꾀함과 동시에 구민 여러분의 의견 등을 묻고 이를 통해 접수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책 등을 결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규칙을 제정하여 구의 통일적인 규범으로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의 행정운영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향상을 꾀하여 구민 참여를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와 구민과의 협동을 통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후레아이 (교류) 토크 택배편 (구 직원을 지역에 파견)

신주쿠구 직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서부터 전문적인 주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구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구 직원이 지역 및 구민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가 행정 대책이나 직원들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이야기 등을 전달합니다. 일반 생활에 관한 주제에서부터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PTA, 마을회, 고령자 클럽, 지역 활동 단체, 학습그룹, 학교수업 등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메뉴는 평생학습 커뮤니티과, 특별출장소 등의 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책무)

제 6 조 구민은 구 내에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서로의 자유 및 인격을 존중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설명

신주쿠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자, 함께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구민이라면, 이 지역(구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와 조화를 꾀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구민의 책무에 포함시켰습니다.

제 3 장 의회 등

(의회의 설치)

제 7 조 구에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를 둔다.

설명

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조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의 경우, 구의회 의원은 선거권을 갖는 신주쿠구 주민들에 의해 선거에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면 그 효과는 신주쿠구라는 구 역내에서 유권자 또는 주민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쿠구의 자치와 신주쿠구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신주쿠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신주쿠구의 여러 사항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 의회, 구와 관여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조례는 자치방식을 규정하는 조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표권을 포괄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에게 한정시키지 않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의 책무)

제8조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구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적정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사하고 감시하기로 한다.

2 의회는 자치체의 입법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입안, 정책제언을 실시하여 의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3 의회는 의회활동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과 공유하고 그 설명책임을 다하기로 한다.

설명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주민들은 수장과 의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함으로써 수장과 의회라는 이원적 대표를 갖습니다.

의회는 구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청장과 대등한 관계로, 자치체 운영의 기본적 방침을 결정(의결)하고 행정운영을 조사, 감시하는 것이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자치체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입안, 정책제언을 실시하여 자치체의 입법기관임을 소리 높여 선언함과 동시에 정책입안, 정책제언을 통해 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개별 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로서 의회활동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과 공유하고 설명책임을 다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책무)

제9조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자각하여 행동하기로 한다.

2 의원은 별도로 규정하는 정치윤리기준 기타 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의회활동을 실시하기로 한다.

설명 구민의 대표로서 권한과 책임을 자각하여 행동할 것을 자치기본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별도로 규정하는 정치윤리기준 기타 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의회활동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제

신주쿠구의회 의원정치윤리조례

신주쿠구의회는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2005년 제2회 정례회에서 의원제출의안인 '신주쿠구의회 의원정치윤리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신주쿠구의회 의원정치윤리조례(전문)

지방분권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주쿠구의회는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그 이상적 모습을 검토하여 실제로 수많은 개혁을 실행해 왔다.

오늘날 의회가 지방분권과 구민참여의 흐름에 대응하여 구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원과 구민이 선거로 성립시킨 위탁관계를 일상적으로 이행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즉 한편에서는 의원이 명확한 기준 하에 자긍심을 가지고 구정을 담당하면서 설명책임을 다하고, 또 한편에서는 구민이 의원을 신뢰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회 활동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주쿠구의회는 의회의 총의를 모아 정치윤리조례를 발의한다.

제 4 장 구청장 등

(구청장의 설치)
제 10 조 구에 구의 대표로 구청장을 둔다.

설명 구청장의 설치는 의회 설치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의 대표로 구청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제 11 조 구청장은 구민의 신탁에 부응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구정운영을 실시하기로 한다.

설명 구청장의 책무로, 구청장은 선출된 결과로서 구민들의 신탁에 부응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구정운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의 행정기관의 책무)
제 12 조 구의 행정기관은 구민에게 가장 친숙한 행정기관으로서, 구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의 판단 및 책임 하에 직무를 집행하기로 한다.
2 구의 행정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구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로 한다.

설명 구의 행정기관은 수도나 국가의 행정기관과는 달리 구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행정기관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여 구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직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책임, 정보공유의 방법으로 구민들이 구정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는 '알기 쉽게' 제공되어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책무)

제 13 조 직원은 구를 사랑하고 구민의 관점에 서서 구의 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2 직원은 구민에게 가장 친숙한 지방정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함과 동시에 별도로 규정하는 공익보호 및 직원행동규준 등에 관한 규정 기타 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3 직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취득 및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설명

우선 직원은 신주쿠구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바탕으로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의 관점에 서서,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은 가장 친숙한 지방정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당연한 일이기는 하나 법령 준수와 공평하고 공정한 직무 집행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익보호와 직원의 행동기준 및 책무의 준수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지식 취득과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나가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제

신주쿠구 공익보호를 위한 신고에 관한 조례 및 신주쿠구 직원의 행동규준 및 책무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구는 공무의 공정한 수행과 공무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확보하고, 구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공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신주쿠구 공익보호를 위한 신고에 관한 조례'를, 직원 등의 규범이 되는 행동규준으로 '신주쿠구 직원의 행동규준 및 책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1일 시행)

신주쿠구 공익보호를 위한 신고에 관한 조례

구가 실시하는 사무가 법령·조례 등의 규율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규율에 반하여 구의 사무가 행해졌을 때에는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시정하는 것이 구의 공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구에서는 법령·조례 등을 위반하여 구의 공익을 해치는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제3자기관인 '신주쿠구 공익보호위원'이 접수하여 시정해나가는 '공익보호를 위한 신고제도'를 창설했습니다. 구의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 여러분과 구의 사무를 맡고 있는 업체 분들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주쿠구 직원의 행동규준 및 책무 등에 관한 조례

본 조례에서는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행동규준으로 정했습니다.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규준]

1 법령준수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2 설명책임

구정의 투명성 확보에 힘쓰고 구의 제반 활동에 관해 구민들에게 설명할 책무를 다합니다.

3 모든 이의 봉사자임을 자각

모든 이의 봉사자라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구민들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일 없이 전체 구민들의 복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공사구별을 명확히 하여 그 직무와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신용 실추 행위의 금지

자신들의 언동이 공무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양식 있는 행동을 취합니다.

신주쿠구 직원의 복무선언에 관한 조례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신주쿠구 직원의 복무선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1년 4월 1일부터 선언서에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추기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이외의 직원인 경우)

[선언서]

본인은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일본국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함과 동시에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를 준수할 것을 굳게 선언합니다.

본인은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을 항상 명심하고, 공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를 깊이 자각하여 모든 이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굳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제 5 장 구정운영의 원칙

(구정운영의 원칙)

제 14 조 구청장은 재정의 건전화 및 자립적인 재정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공평한 관점에 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2 구청장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구의 기본구상에 의거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정하기로 한다.

3 구청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구의 재정상황을 공표하기로 한다.

4 구의 행정기관은 조직 상호간의 연계를 꾀하여 모두 하나가 되어 행정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직을 정비하기로 한다.

5 구의 행정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파악함과 동시에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참여 및 협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다.

6 구의 행정기관은 행정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 공표하고 구정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하기로 한다.

설명

우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관으로서의 구청장의,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재정상황의 공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관점에 서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실시할 것

2 기본구상에 의거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정할 것

3 재정상황에 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구의 재정상황을 공표할 것

의 3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구의 행정기관의, 구정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4 구민 요구(행정수요, 행정과제 등)에 대응하여 구의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의 정비, 편성에 있어 상호연계를 꾀하여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

5 '구정에 참여할 권리'에 따라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기회와, 구민과 구의 행정기관이 공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각각의 역할과 책임 부분에서 연계하여 서로 협력할 기회(협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

6 행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것과 그 행정평가 결과를 구정에 적절히 반영할 것

의 3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 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제 15 조 구의 행정기관 및 의회는 구정에 관한 정보에 대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구민과의 공유를 꾀하기로 한다.

설명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향후 계속해서 구민들의 구정 참여와 지역자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취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권리'의 전제로서 구의 행정기관과 의회에 대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구정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구민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신주쿠구 정보공개조례'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주쿠구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해】

2021년 5월 19일 ‘디지털 사회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2021년 법률 제3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7호. 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는 지방공공단체 기관에서도 법이 직접 적용되며, 법 규정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공통 규칙에 따른 적절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31일에 ‘신주쿠구 개인정보보호조례’를 폐지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신주쿠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의회에 대해서는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신주쿠구 의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 제

신주쿠구의 정보공개제도

신주쿠구의 정보공개제도는 구의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구민 등에게 제공하는 모든 시책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의무적인 공개정보뿐만 아니라 임의적인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청구 유무	**의무적인 것**	**임의적인 것**
정보공개제도	구민의 청구에 의한 것	정보공개 신주쿠구 정보공개조례의 공문서공개 청구권에 의한 열람 등	정보제공 구의 시설과 창구에서의 정보제공 (구민들의 문의에 따른 자료 제공과 전화 등의 응대 등)
	구민의 청구에 의하지 않은 것	정보공표 법령 등에 의거한 의무적인 정보공표 (지방자치법 제 243 조의 3 등에 의한 지방재정상황 공표 , 정보공개조례 제 19 조에 의한 운용상황 공표 등)	정보제공 자율적인 정보제공 (홍보지 발행 , 행정자료 발행 , 행정정보의 홈페이지 게재 등)

신주쿠구 정보공개조례에서는 '의무적 정보공개' 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정보공표 · 정보제공' 의 적극적 추진에 대해 구에 노력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의무적인 정보공개' 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구민 등의 청구에 따라 공개할 것을 행정기관 등에 의무화하는 제도로, 정보공개 추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구의 행정기관 및 의회는 각기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로 한다.

설 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공개하는 가운데 구의 행정기관과 의회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그 이용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구의 행정기관 및 의회에 대해 각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적절하게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신주쿠구 개인정보보호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 제

신주쿠구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 신주쿠구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하여

신주쿠구의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구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하고도 원활한 구정운영을 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여할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시책을 뜻합니다.

2 신주쿠구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변천

오늘날 정보처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정보의 대량처리 및 다면적 이용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신주쿠구에서도 다양한 컴퓨터가 널리 활용됨으로써 구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효율화에 있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급방법에 따라서는 구민들의 개인생활을 위협하고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주쿠구에서는 1985년 6월에 '도쿄도 신주쿠구 전자계산조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전산조례'라고 한다)를 시행하고 전자계산기를 통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왔습니다.

또한 1990년 10월에 '도쿄도 신주쿠구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시행하여 전산 처리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매뉴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보호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리고 1987년 4월에 시행된 '도쿄도 신주쿠구 공문서공개조례' 및 2001년 10월에 시행된 '신주쿠구 정보공개조례'에서는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이와 같은 신주쿠구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실적을 고려하여,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이 2003년 5월에 공포되어 지방공공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진 점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에 벌칙규정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 것입니다.

제 7 장 주민투표

(주민투표)

제 17 조 구는 주민생활 및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주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투표제도(이하 '주민투표'라고 한다)를 마련한다.

2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 자는 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령 만 18 세 이상인 자로, 별도의 조례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설명

주민투표제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구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 주민들의 생활 및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제도를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른바 상설형 제도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연령 만 18세 이상의 주민들 중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주민투표의 실시)

제 18 조 주민투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실시하기로 한다.

(1) 전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령 만 18 세 이상인 자 중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총수의 5 분의 1 이상의 연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청구가 있었을 때.

(2) 전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 정수의 12 분의 1 이상의 자로부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발의가 있었고, 의회가 이를 의결했을 때.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전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주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설명

우선 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로부터, 그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자의 연서를 가지고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정수의 12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었고, 의회가 이를 의결한 경우에는, 주민투표

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의원의 의안제출권에 따른 내용입니다.

또한 구청장 자신도 주민생활 및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결과의 존중)

제 19 조 구는 주민투표 실시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설명 여기에서는 구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기했습니다.

(조례에 대한 위임)

제 20 조 전 3 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주민투표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규정한다.

설명 주민투표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민, 의회, 구의 3 자가 검토한 본 조례의 이념에 의거하여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 장 지역자치

(지역자치)

제 21 조 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를 존중하고 구민이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자치를 추진한다.

2 구의 행정기관은 지역자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3 구민은 제 1 항의 지역 만들기를 실시하기 위해 지역구분별로 지역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4 지역구분 및 지역자치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설 명

지역자치에 대해 4가지를 규정했습니다.

1 지역자치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를 존중하면서 더욱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속에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의 행정기관은 제1항의 지역자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1항의 지역 만들기(지역자치)를 실시하는 주체는 구민으로, 지역 구분별로 지역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지역 구분과 지역자치조직에 관한 상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구민, 의회, 구의 3자가 검토한 본 조례의 이념에 의거하여 다른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9 장 어린이의 권리 등

(어린이의 권리 등)

제 22 조 어린이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가지며, 이와 동시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다.

설 명

어린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구정 문제에 관하여 각각의 연령에 맞는 형태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며, 건강하게 자랄(심신의 성장, 교육 등)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정부, 기타 자치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등

(정부, 기타 자치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제 23 조 구는 광역적인 과제 또는 공통과제를 해결할 때에는 정부, 도쿄도 기타 자치체 및 관계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연계를 꾀하고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설명 구는 의료와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적 또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도쿄도, 기타 자치체, 병원, 대학, NPO 법인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연계를 꾀하고 과제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
제 24 조 구는 국제도시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이해 및 협조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설명 신주쿠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근무하고, 배우는 지역이자, 관광 등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본조에서는 이러한 국제도시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이해 및 협조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1 장 조례의 재검토 등

(조례의 재검토 등)
제 25 조 구청장은 4 년을 넘지 않는 기간마다 본 조례 및 관련 제반 제도에 대해 구민 및 의회와 함께 검증하고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설명 본 조례는 신주쿠구의 최고규범임과 동시에 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상 진화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적인 자치방식은 관련 제반 제도와 사회경제정세 변화에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4년을 넘지 않는 기간마다 본 조례 및 관련 제반 제도를 구민 및 의회가 함께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 칙

본 조례는 2011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제정을 위한 노력

1 기본구상 등과 자치기본조례

신주쿠구는 2007년 12월에 새로운 기본구상을 수립했습니다.

신주쿠구의 기본구상

3가지 기본이념

- **구민이 주역인 자치를 실현합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듭니다.**
-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약 20년 후의 신주쿠구의 모습

'신주쿠의 힘' 으로 창조하는, 편안하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

※ '신주쿠의 힘'이란 신주쿠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신주쿠구에서 근무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지역은 우리들의 힘으로 책임지고 우리들의 힘으로 만들어나가고 싶다'는《자치의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구상에 따라 '향후의 신주쿠구의 지역 만들기 기본규칙인 (가칭) 자치기본조례를 구민, 의회 및 구가 하나가 되어 제정합니다.' 라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정하고 제1차 실행계획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4년간의 사업계획) 에 2009년도까지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명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신주쿠구의 자치기본이념 ·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치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과의 협의

자치기본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신주쿠다운 자치방식을 확인하고 구민, 구의회,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7년 10월 19일, 구청장은 의장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 기본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구민, 구의회 및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기로 한다. 당분간은 구의회 및 집행기관이 함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개략적인 사고방식과 과제, 논점 등을 정리하기로 한다.
(2) 이를 위해 구의회 및 집행기관은 상호간에 정보교환 및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장으로, (가칭) 자치기본조례검토연락회의 (이하, '검토연락회의' 라고 한다) 를 공동의사에 따라 설치하기로 한다.
(3) 검토연락회의는 구의회의원 약간 명, 구직원 약간 명 및 학식경험자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한다.
(4) 검토연락회의와 관련된 비용부담 기타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정하기로 한다.
(5) 구의회와 집행기관은 검토연락회의에서의 정보교환 및 의견교환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검토체제를 정비하기로 한다.
(6) 기본조례 제정과정에 대한 구민참여방법에 대해서는 검토연락회의 발족 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7) 기타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적절하게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협의 후 2007년 11월 2일자로 상기 내용이 포함된 협의서를 교환하였으며, 이때부터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3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검토연락회의 (이하 , 검토연락회의라고 한다)

협의서에는 '자치기본조례 제정 시에는 신주쿠의 이상적인 자치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 구의회,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기로 한다. 또한 당분간은 구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개략적인 사고방식과 과제 및 논점 등을 정리한다' 고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검토연락회의가 설치되었습니다.

좌장 (학식경험위원) 으로는 공익재단법인 지방자치종합연구소의 츠지야마 타카노부 씨가 위촉되었습니다.

●검토연락회의의 역할

구의회 및 집행기관은 상호간에 정보교환 및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장으로, 검토연락회의를 공동으로 설치한다.

●검토연락회의의 구성

제 1 회 회의 (2007 년 11 월 12 일) 부터 제 11 회 회의 (2008 년 12 월 16 일) 까지

총 13 명

구의회의장 및 구청장이 위촉한 학식경험자 1 인	(학식경험위원)
구의회의장이 선임한 구의회의원 6 인	(구의회위원)
구청장이 선임한 구직원 6 인	(구직원위원)

학식경험위원을 좌장으로 하고, 구의회위원과 구직원위원 중에서 각각 1 명씩을 부좌장으로 한다.

제 12 회 회의 (2009 년 2 월 6 일) 이후

총 19 명

구의회의장 및 구청장이 위촉한 학식경험자 1 인	(학식경험위원)
구의회의장이 선임한 구의회의원 6 인	(구의회위원)
구청장이 선임한 구직원 6 인	(구직원위원)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구민검토회의의 대표 6 인	(구민대표위원)

학식경험위원을 좌장으로 하고, 구의회위원과 구직원의원 및 구민대표위원 중에서 각각 1 명씩을 부좌장으로 한다.

구민과 구의회와 구청장 (집행기관) 의 검토조직 (이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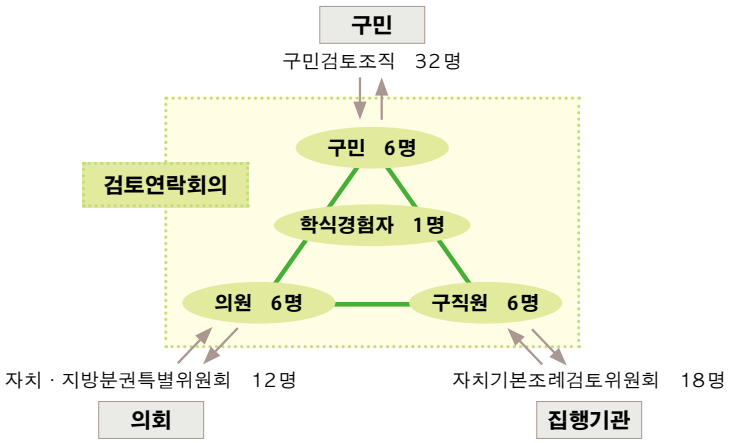

검토연락회의 연도별 회의개최 수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합계
5회	7회	16회	16회	44회

4 구민검토조직 (구민검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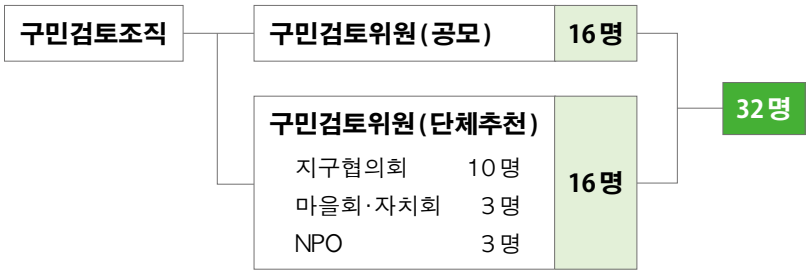

[지구협의회]
신주쿠구에는 구민 구정참여의 장 및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장으로서 10개의 지구협의회(임의단체)가 있다.
마을회 등의 각종 지역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열린 협의회로서, 지구 내의 의견이 집약되는 장으로 만든다.

○협의서에 의거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은 새로운 협의서를 교환하고 '(가칭) 신주쿠구자치기본조례 구민검토회의' (이하, 구민검토회의라고 한다)를 2008년 7월 22일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구민검토회의는 2009년 1월 22일 회의명칭을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 구민검토회의'로 정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협의서에 구민검토회의에서 대표 6명이 검토연락회의에 참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구민검토회의의 검토추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민검토회의의 운영

구민검토회의 운영방법은 구민검토회의가 결정한다.
또한 검토연락회의 위원이 옵서버로 수시로 참가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 등을 제공한다.
(실질적으로 옵서버 참가는 검토연락회의에 구민대표위원이 참가할 때까지)

② 학식경험자・퍼실리테이터의 설치

구민검토회의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식경험자(공익재단법인 지방자치종합연구소의 츠지야마 타카노부·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 우시야마 쿠니히코) 및 퍼실리테이터(진행역)를 둔다.

퍼실리테이터는 학식경험자의 강의지원, 워크숍의 각 반의 진행관리 및 조정, 반 발표의 요약정리 지원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구민검토회의의 회의록 정리, 자료작성 등을 담당한다.

③ 구민검토회의의 검토주제

주제설정에 대해서는 타 자치체의 사례 등을 참고로 예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검토회의가 스스로 설정한다.

④ 주제의 검토방법

하나의 주제의 검토과정은 3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①학습→②워크숍→③요약정리'라는 형태로 진행한다.

⑤ 구민검토회의의 사무국

구민검토회의의 사무국은 종합정책기획정책과 및 의회사무국이 담당한다.

구민검토회의 연도별 회의개최 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합계
14회	26회	19회	59회

5 조례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2007년

2월 자치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

신주쿠구민회의의 제언서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기본구상심의회 답신에는 (가칭)자치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2007년 12월에 수립한 기본구상 · 종합계획에 제시된 '자치의 기본이념, 기본원칙의 확립'을 위해 약 4년에 걸쳐 신주쿠구자치기본조례 제정에 힘써왔습니다.

5월 자치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의회에 자치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자치기본조례검토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11월 검토연락회의를 설치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자치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체결하였으며, 구(행정)와 구의회가 자치기본조례 검토를 위한 검토조직으로 검토연락회의를 공동설치했습니다.

구(행정)와 구의회로 구성된 검토연락회의에서는 자치기본조례 검토 시의 구민참여방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토연락회의의 모습

2008년

5월 **지역간담회의 개최와 구민검토위원의 공모**

구가 자치기본조례 제정 추진경과와, 자치기본조례를 검토하기 위한 구민검토조직인 구민검토회의의 공모위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구 내 10곳에서 지역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8년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차례 개최)

7월 구민검토회의의 발족

공모위원 16명과 지구협의회, 마을회·자치회, NPO의 단체추천위원 16명 등 총 32명과 학식경험자로 구성된 구민검토회의가 발족했습니다.

구민검토회의는 발족부터 조례제정까지 56차례의 회의를 개최(월 2~3차례 정도의 회의를 개최, 학식경험자, 퍼실리테이터의 지원)

구민검토회의 워크숍

2009년

1월 **검토연락회의에 참가할 구민대표위원 6명을 선출**

구민검토회의에서 검토연락회의에 참가할 구민대표위원 6명이 선출되었습니다.

2월 **구민, 의회, 구(행정)의 3자에 의한 검토연락회의를 개최**

3자에게서 각각 선발된 6명과 학식경험자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검토연락회의에서는 3자가 각각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조례골자안이 검토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중간보고회 개최(1월 30일)**

지금까지의 검토연락회의의 검토경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구민 여러분과 의견교환을 실시했습니다.

자치기본조례 중간보고회

7월 **검토연락회의가 조례골자안을 작성**

검토연락회의에서 구민, 의회, 구(행정) 3자의 안을 바탕으로 조례골자안이 작성되었습니다.

6월~8월 **구민 설문조사, 구민토의회, 지역간담회, 퍼블릭 코멘트의 실시**

보다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구민 설문조사와 ※구민토의회, 지역간담회, 그리고 조례골자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를 개최했습니다.

・6월 4일~25일	구민 설문조사의 실시
・6월 19일, 20일	구민토의회의 개최
・8월 3일, 5일, 7일	지역간담회를 3차례 개최
・7월 14일~8월 11일	퍼블릭 코멘트의 실시

8월 **검토연락회의에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에게 조례 초안을 제출(8월 26일)**

구민, 의회, 구(행정) 3자의 안을 바탕으로 조례골자안을 작성하고 약 40차례의 검토연락회의를 개최하여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츠지야마좌장이 구청장과 의장에게 조례 초안을 제출

10월 **자치기본조례의 제정(10월 14일)**

구는 검토연락회의가 제출한 조례 초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 14일 제3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가결, 제정되었습니다.

11월 **지역보고회를 개최**

조례 제정 후 2010년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구 내 10곳의 지역센터에서 지역보고회(총 218명 참가)를 개최했습니다.

용어 해설

※구민토의회

'무작위로 선정' 한 1,500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구민 분들이 6월 19일·20일의 2일간, 검토연락회의에서 작성된 '자치기본조례 골자안' 을 중심으로 설정한 6개의 주제에 대해 토의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민토의회는 신주쿠구가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는 1970년대에 독일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방법인 'planung zelle' 를 참고하여 실시한 것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 방법을 도입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조문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

(신주쿠구 조례 제43호)

목차

전문
제1장 총칙(제1조- 제4조)
제2장 구민(제5조, 제6조)
제3장 의회 등(제7조- 제9조)
제4장 구청장 등(제10조- 제13조)
제5장 구정운영의 원칙(제14조)
제6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15조, 제16조)
제7장 주민투표(제17조- 제20조)
제8장 지역자치(제21조)
제9장 어린이의 권리 등(제22조)
제10장 국가, 기타 자치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등(제23조, 제24조)
제11장 조례의 재검토 등(제25조)
부칙

전 문

우리들의 선조들은 과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무사시노 대지의 일각에 집락을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이 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면면이 삶을 영위하며,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워왔습니다.

1947년에 우시고메, 요츠야, 요도바시의 3개 구가 합병하여 탄생된 신주쿠구는 에도시대부터 계획적으로 개발된 시가지지역,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한 신흥상업지역, 구릉지의 언덕에 위치한 순수 농촌지역 등, 각 지역에 따라 다른 풍경을 보여주며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도시화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도 도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주쿠구에는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어우러져 살고 있으며, 날마다 많은 변화 속에서 활력 넘치는 국제적인 도시로서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주쿠구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구축해온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가 도처에 숨쉬고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문호 나츠메 소세키를 비롯하여 훌륭한 인재들을 수없이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주쿠구는 시대의 첨단을 이끄는 새로운 문화의 발신지로서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과 지역풍토는 신주쿠구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특성으로, 우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주쿠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정보 공유화와 구정 참여촉진을 꾀하여 성숙된 지역자치를 이 신주쿠에 꽃피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커다란 사명입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명확하게 감지하여 세계영구평화와 지구환경보전을 추구하고 서로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시민주권 하에 이 땅에 가장 적합한, 우리들이 주역인 자치를 창조합니다.

우리들은 세계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신주쿠구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후세대에 계승하고 모든 이의 마음을 기반으로 삼은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담아, 신주쿠구의 최고규범으로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본 조례는 자치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에 의거한 구정운영원칙 및 구민, 신주쿠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그리고 신주쿠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로써 신주쿠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더 수준 높은 자치실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본 조례에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구민: 구의 구역 내(이하 '구 내'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및 구 내에서 근무하는 자, 배우는 자, 활동하는 자 및 활동하는 단체를 뜻한다.

(2)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기본법(2009년 법률 제40호) 제2조에 규정하는 공공서비스를 뜻한다.

(3) 구의 행정기관: 구청장, 신주쿠구교육위원회, 신주쿠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신주쿠구감사위원을 뜻한다.

(4) 직원: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뜻한다.

가 지방공무원법(1950년 법률 제261호)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직에 있는 자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직에 있는 자(의원 제외)로 구에 근무하는 자

나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56년 법

률 제162호) 제3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비 부담 교직원으로, 구에 근무하는 자

(기본이념)

제3조 구는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구정을 실시한다.

2 구는 구민이 주역인 자치실현을 꾀하고, 구민은 자치 담당자로서 지역 과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3 구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의거한 기초자치체로, 확립된 자치권을 가지고 구민자치를 기본으로 한 구정을 추진한다.

(조례의 법적 위치)

제4조 구는 본 조례를 구의 최고규범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데 있어서는 본 조례와의 정합성을 꾀하기로 한다.

제2장 구민

(구민의 권리)

제5조 구민은 구정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갖는다.

2 구민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구민은 구정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4 구민은 구 자치의 담당자로서 평생동안 배울 권리를 갖는다.

(구민의 책무)

제6조 구민은 구 내에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서로의 자유 및 인격을 존중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제3장 의회 등

(의회의 설치)

제7조 구에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를 둔다.

(의회의 책무)

제8조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구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적정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사하고 감시하기로 한다.

2 의회는 자치체의 입법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입안, 정책제언을 실시하여 의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3 의회는 의회활동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과 공유하고 그 설명책임을 다하기로 한다.

(의원의 책무)

제9조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 이라고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자각하여 행동하기로 한다.

2 의원은 별도로 규정하는 정치윤리기준 기타 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의회활동을 실시하기로 한다.

제4장 구청장 등

(구청장의 설치)

제10조 구에 구의 대표로 구청장을 둔다.

(구청장의 책무)

제11조 구청장은 구민의 신탁에 부응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구정운영을 실시하기로 한다.

(구의 행정기관의 책무)

제12조 구의 행정기관은 구민에게 가장 친숙한 행정기관으로서, 구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의 판단 및 책임 하에 직무를 집행하기로 한다.

2 구의 행정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구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로 한다.

(직원의 책무)

제13조 직원은 구를 사랑하고 구민의 관점에 서서 구의 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2 직원은 구민에게 가장 친숙한 지방정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함과 동시에 별도로 규정하는 공익보호 및 직원행동규준 등에 관한 규정 기타 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3 직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취득 및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제5장 구정운영의 원칙

(구정운영의 원칙)

제14조 구청장은 재정의 건전화 및 자립적인 재정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공평한 관점에 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2 구청장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구의 기본구상에 의거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정하기로 한다.

3 구청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구의 재정상황을 공표하기로 한다.

4 구의 행정기관은 조직 상호간의 연계를 꾀하여 모두 하나가 되어 행정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직을 정비하기로 한다.

5 구의 행정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파악함과 동시에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참여 및 협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다.

6 구의 행정기관은 행정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 공표하고 구정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하기로 한다.

제6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제15조 구의 행정기관 및 의회는 구정에 관한 정보에 대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구민과의 공유를 꾀하기로 한다.

(개인정보보호)

제16조 구의 행정기관 및 의회는 각기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로 한다.

제7장 주민투표

(주민투표)

제17조 구는 주민생활 및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주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투표제도(이하 '주민투표' 라고 한다)를 마련한다.

2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 자는 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령 만18세 이상인 자로, 별도의 조례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주민투표의 실시)

제18조 주민투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실시하기로 한다.

(1)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령 만18세 이상인 자 중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청구가 있었을 때.

(2)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 정수의 12분의 1 이상의 자로부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발의가 있었고, 의회가 이를 의결했을 때.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주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투표 실시결과의 존중)

제19조 구는 주민투표 실시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조례에 대한 위임)

제20조 전 3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주민투표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규정한다.

제8장 지역자치

(지역자치)

제21조 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를 존중하고 구민이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자치를 추진한다.

2 구의 행정기관은 지역자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3 구민은 제1항의 지역 만들기를 실시하기 위해 지역구분별로 지역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4 지역구분 및 지역자치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장 어린이의 권리 등

(어린이의 권리 등)

제22조 어린이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가지며, 이와 동시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다.

제10장 정부, 기타 자치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등

(정부, 기타 자치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제23조 구는 광역적인 과제 또는 공통과제를 해결할 때에는 정부, 도쿄도 기타 자치체 및 관계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연계를 꾀하고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국제사회와의 관계)

제24조 구는 국제도시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이해 및 협조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제11장 조례의 재검토 등

(조례의 재검토 등)

제25조 구청장은 4년을 넘지 않는 기간마다 본 조례 및 관련 제반 제도에 대해 구민 및 의회와 함께 검증하고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부 칙

본 조례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 안내서
(한글판)

2012년 3월 발행

편집·발행　신주쿠구 종합정책부 기획정책과
도쿄도 신주쿠구 카부키쵸 1-4-1
전화 (03) 3209-1111

인 쇄 물 작 성 번 호
２０１１－２２－２１０１

본 인쇄물은 업자위탁을 통해 1,000부가 인쇄되었습니다. 1부당 경비는 282.45엔(세금 포함)입니다. 단, 편집 시의 직원 인건비와 배송경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